

2025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지원 참여기업 모집(2분기)

전북특별자치도 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6월 4일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
- 모집기간 : 2025. 6. 4.(수) ~ 6. 27.(금) 16시
- 지원대상 : 도내 소재¹⁾ 50인 이하 제조기반 소기업²⁾
 - 1) 제조시설(공장)이 도내에 소재
 - 2) 「중소기업 확인서」상 “소기업” 명시(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필수)
- 지원규모 : 금40,000,000원(사천만원) 한도 내(30개사 정도)
- 지원내용
 - ①시험분석(최대 2백만원), ②품질인증획득(최대 5백만원) 중 택 1
 - 인증 시험/평가비용(공인인증시험/평가기관), 획득 비용(인증기관) 지원
 - 소요비용의 80% 지원(VAT제외, 기업부담금 20%)
 - 연간 최대 2회 지원, 다분석 건 일괄신청 가능

구분	① 시험분석지원		② 품질인증획득 지원			
	내용	업종	A형	B형		
지원내용	▪ 위해요소, 세균, 미생물 검사, 중금속 검사, 잔류농약 검사 ▪ 영양성분 분석 ▪ HACCP 유효성 검사	식품제조 및 가공	KS, KC, KCS, K마크, Q마크, GR,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, 녹색인증(기술/제품), 환경표지인증, 식품안전관리인증(HACCP제품인증)	신제품(NEP), 신기술(NET), GS(S/W), ICT융합품질인증, 성능인증(EPC),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, 혁신제품(FT1·2·3), 조달우수제품인증		
	▪ 세탁 견뢰도, 섬유의 조성 및 혼용율 분석	의류제조				
	▪ 제품 성능, 품질 또는 성분 분석 신뢰성평가	모든업종				
지원한도	기업당 최대 2백만원		한도	인증별 최대 2백만원(기업당)	한도	인증별 최대 5백만원(기업당)
			기업당 최대 5백만원 * A, B유형 중복 신청가능			

2 세부지원 내용

□ 지원제외대상

- 최근 5년간(2020~2024년)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중 시험분석 또는 품질인 증획득 지원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서 각 3회 이상 수혜기업
- [세부사업간 중복지원불가] 「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(혁신기반 공정개선, ESG공정 개선)」 당해연도(2025년)내 선정 및 지원기업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
-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
- 개인회생·파산·면책권자

□ 시험분석 지원내용

- 지원한도 : 기업당 최대 2백만원
- 지원내용
 - 인증 시험/평가비용(공인인증시험/평가기관), 획득 비용(인증기관)
 - 소요비용의 80% 지원(VAT제외, 기업부담금 20%)
 - 연간 최대 2회 지원, 다분석 건 일괄신청 가능
- 세부사항

구분	내용	업종
지원내용	▪ 위해요소, 세균, 미생물 검사, 중금속 검사, 잔류농약 검사 ▪ 영양성분 분석 ▪ HACCP 유효성 검사	식품제조 및 가공
	▪ 세탁 건뢰도, 섬유유 조성 및 혼용율 분석	의류제조
	▪ 제품 성능, 품질 또는 성분 분석 신뢰성 평가	모든업종
지원제외	▪ 원·부자재 시험분석 : 직접 생산 및 가공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도입하는 원·부자재 ▪ 수질분석 ▪ 참고용 검사, 자가품질검사 : 대외 활용목적이 아닌 내부 활용목적이 검사분석 (대외 활용목적 증빙 : 거래처 및 제출기관의 요구 및 회신자료 첨부) ▪ 순수 분석 외 비용(부가세, 기본료, 전처리비, 우송료, 검사자 인건비, 발급비 등은 제외) ▪ 참여기업이 직접 시험분석을 의뢰하지 않고, 제3자가 시험분석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분석	

- 인정범위
 - 시험분석 성적서 기준 2024. 12. 1. 이후 취득 건
 - 2024. 12. 1. 이후 취득 건 중 지원금 既수혜 건 제외
 - 다수기업 동일 대표자인 경우, 1개 기업만 지원

□ 품질인증획득 지원내용

- 지원한도 : 기업당 최대 5백만원
- 지원내용
 - 인증 시험/평가비용(공인인증시험/평가기관), 획득 비용(인증기관)
 - 신청금액에 따른 선정비용의 80% 지원(VAT제외, 기업부담금 20%)
 - 연간 최대 2회 지원, 다분석 건 일괄신청 가능
 - 지원한도 내에서 A, B유형 중복 신청가능
- 세부사항

구분	인증 범위	지원 한도
A형	KS, KC, KCS, K마크, Q마크, 환경마크(환경표지인증),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, GR마크, 녹색인증(기술, 제품), 식품안전관리인증(HACCP 제품인증)	인증별 최대 2백만원 (기업당)
B형	신제품(NEP), 신기술(NET), GS(S/W), ICT융합품질인증, 성능인증(EPC),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, 혁신제품(FT1·2·3), 조달우수제품인증	인증별 최대 5백만원 (기업당)
지원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참여기업이 직접 획득하지 않고, 제3자를 통해 취득한 인증획득 ▪ 인증획득을 위한 용역 대행 컨설팅 비용 ▪ 공인시험분석, 인증서 획득 이외의 제반비용(시험평가 전문인력 인건비, 교통비, 면허세, 기타수수료 등) ▪ 既획득 인증서의 자격기간의 연장, 규격 추가 등 	

- 인정범위
 - 인증서 기준 2024. 12. 1. 이후 취득한 최초 인증서(인증 획득 시 분석 및 성능 검사비가 포함된 경우 분석 및 성능검사비 인정은 2024년에 진행한 건에 한해 신청 가능)
 - 2024. 12. 1. 이후 취득 건 중 지원금 既수혜 건 제외
 - 다수기업 동일 대표자인 경우, 1개 기업만 지원

3 문의처 및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5. 6. 4.(수) ~ 6. 27.(금) 16:00 까지(기한엄수)
- 접수처 :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(www.jbok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- 문의처 : 063-711-2164, 2072 (이다영 선임담당관, 이민옥 담당관)

제출 시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청서는 회사직인 날인, 대표자 서명/직인날인 후 PDF 파일로 제출 ▪ 파일명 : (예시1) 기업명_소기업_시험분석지원신청서.pdf ▪ 파일명 : (예시2) 기업명_소기업_품질인증획득지원신청서.pdf
----------------------	--

4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	서식1호
2	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1부	서식2호
3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	서식3호
4	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	서식4호
5	사업자등록증 1부	필수 (지원자격확인용)
6	중소기업 확인서 1부(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必)	
7	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(건축물 용도: 공장/제조업소 限) - 제조시설 500㎡ 이상 : 공장등록증 제출 - 제조시설 500㎡ 미만 : 건축물관리대장(갑) 제출 - 제조시설 임대사용의 경우 : 위 서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	
8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	
9	전년도 12/31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	
10	통장사본(사업자용) 1부	필수 (지출증빙)
11	이체확인증 또는 입금증 사본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	
12	세금계산서(카드결제 영수증 건은 제외)	
13	견적서 및 시험분석의뢰서(시험분석기관 또는 인증기관 발행)	
14	시험성적서 및 인증서(시험분석기관 또는 인증기관 발행)	필수(평가자료)
15	2023년~2024년 재무제표 각 1부 ※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가능	
16	시험목적에 따른 증빙자료 (수출 및 요청 증빙, 조달청 공고문, 재인증·연장인증서, 법정 정기검사 공문, 거래처 거래 및 요청 증빙 등)	시험분석限필수 (평가자료)
17	- 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 우수기업 지정 증빙자료 (전북유망중소기업, 전북우수중소기업인, 수출유망중소기업) -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기업(돈움, 도약기업) -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, 부설연구소 지정 등 ※제출증빙은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必	품질인증限필수 (평가자료)
18	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)	선택(평가자료)

5 선정 및 사업비 지급

- 평가방법 : 서면평가
- 평가위원 :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구성
- 평가내용 :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
- 평가기준
 - 정량평가 70점, 정성평가 30점(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)
 - 항목별 득점을 종합한 고득점순으로 지원기업 선정(동점 시 낮은 업력 순 선정)

○ 평가항목 및 배점

① 시험분석지원

평가부문		평가항목	배점	비고
정량평가	제조업 전업율 (제품매출비율)	▪ 50% 이상 : 25점 / 50% 미만 : 20점	25	
	분석목적	▪ 수출 : 20점 / 조달등록 : 16점 / 거래처 제출 : 12점 / 재인증·인증연장, 법정 정기검사 : 10점 / 기타 분석목적 : 5점	20	
	기업역량	▪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) 보유 - 3건 이상 : 10점 / 2건: 8점 / 1건 : 6점 / 0건 : 4점	10	
	지원현황	▪ 최초 사업참여 신청 : 5점 / 재신청 3점	5	
	기업현황	▪ 최근 2개년(23~24년) 평균매출 3억 이하 : 5점 / 3억 이상 3점 ▪ 최근 2개년(23~24년) 연속 20% 이상 매출 감소 : 5점 / 연속 20% 미만 매출 이상 : 3점	5	
5				
소계			70	
정성평가	시험분석적정성	▪ 분석내용의 적정성(분석목적 및 내용 일치 여부)	10	
	분석제품 활용도	▪ 시험분석 진행 결과에 따른 제품의 활용도	10	
	시험분석 활용효과	▪ 신제품 개발, 품질개선, 제품인증, 신규 지식재산권 출원 여부 등 ▪ 매출 증대 가능성	10	
소계			30	
합계			100	

※ 분석목적이 다수인 경우, 선정평가 시 분석목적에 따른 제출증빙 검토를 통해 점수 반영

② 품질인증획득 지원

평가부문		평가항목	배점	비고
정량평가	제조업 전업율 (제품매출비율)	▪ 50% 이상: 25점 / 50% 미만 : 20점	25	
	신규 인증 획득	▪ 신규획득 인증 종류 2종 이상 : 10점 / 1종: 6점	10	
		▪ 인증제품 종류 3종 이상 : 10점 / 2종 : 8점 / 1종 : 6점	10	
	기업역량	▪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) 보유 - 3건 이상: 10점 / 2건: 8점 / 1건: 6점 / 0건: 4점	10	
	기업현황	▪ 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 우수기업(전북유망중소기업, 전북우수중소 기업인,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: 2025년 유효),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기업(돋움, 도약기업) : 5점 / 미지정 : 3점 (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, 부설연구소 지정 등) ▪ 최근 2개년(23~24년) 평균매출 3억 이하 : 5점 / 3억 이상 3점 ▪ 최근 2개년(23~24년) 연속 20% 이상 매출 감소 : 5점 / 연속 20% 미만 매출 이상 : 3점	5	
			5	
5				
소계			70	
정성평가	인증획득의 적정성	▪ 인증취득의 필요성	10	
	기술경쟁력	▪ 인증취득제품의 우수성 및 차별성	10	
	사업성 및 활용효과	▪ 인증활용계획의 구체성 또는 사업화 전략 ▪ 매출성과 증대 및 수출 등 지역 경제 기여도	10	
소계			30	
합계			100	

○ 선정결과

- 우리원 홈페이지(jbba.kr) 선정결과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

○ 사업비 지급

- 선정결과에 따른 지원금 지급(기업부담금, 불인정 및 불가 항목 제외)
- 선정기업 평가 후 자료보완 및 필요시 현장점검 확인 완료 후 지급

○ 추진일정(안) ※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

6 유의사항

- 신청서류는 마감일 16: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, 신청서 등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필요시 신청기업에 추가자료 요청 및 필요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.
-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음.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, 지급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 처리되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*이 부과됨.

* 제재부가금

- 허위청구(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[받은 지원금]의 5배
- 과다청구(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([받은 지원금]-[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])의 3배
- 목적 외 사용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 : [정해진 목적·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]의 2배

-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,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.
- 사업참여업체는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.
-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.
- 시험분석 또는 품질인증획득을 위해 참여기업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, 대행업체 또는 용역업체를 통해 취득한 경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며, 신청한 다수건 중 포함되어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대행업체 또는 용역업체 실시 건은 불인정 처리되어 지원금액에서 차감됨. 끝.

참 고

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

□ **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8조 제1항 관련)**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	
2. 음료 제조업	C11	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	C20	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)	C25	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
15. 가구 제조업	C32	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
17. 수도업	E36	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	
19. 광업	B		
20. 담배 제조업	C12	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)	C13	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)	C16	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29. 건설업	F		
30. 운수 및 창고업	H		
31. 금융 및 보험업	K	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	
32. 도매 및 소매업	G	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	E(E36제외)		
35. 부동산업	L	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	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	
41. 교육 서비스업	P	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